

공정위, 6~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실시

- 동부, 동양 등 5개 기업집단 소속 5개 업체, 총 25개사 조사대상으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45일의 기간동안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2차 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집단소속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우량계열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는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행위가 근절되어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6~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3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6~30대 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간 자금거래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거래 1,500억원 이

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계열사간 자금·자산의 거래규모가 큰 동부, 동양, 한솔, 한진, 한화 등 상위 5개 기업집단을 제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으며, 각 기업집단별로 흑자를 시현하면서 내부지원이 많은 업체나 적자를 시현하고 지원받은 규모가 큰 업체, 또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매개역할을 하는 금융사나 계열사간 자금·자산의 지원 등 내부거래가 많은 업체 등 서면조사 분석 결과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많은 5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의 자금 대여를 거래함에 있어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경우나 회사채나 기업어음, 주식 등 유가증권과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당한 자금·자산의 지원행위와 부당한 거래저절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차별적취급행위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상품·용역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있다.

◆ 조사대상 업체 ◆

기업집단명	조사대상 업체	업체수
동 부	동부제강, 동부한농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동부화재	5
동 양	동양시멘트, 동양제과, 동양매직, 동양시스템하우스, 동양증권	5
한 솔	한솔제지, 한솔전자, 한솔화학, 한솔건설, 한솔파이낸스	5
한 진	(주)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한불증권	5
한 화	(주)한화, 한화종합화학, 한화기계, 한화유통, 한화증권	5